

■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시민권에 관한 법령안

Citizenship Act of 2021(불체자 구제안 포함)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2021년 시민권에 관한 법령은 행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이며 아직 정식으로 의회가 상정을 위해 마련한 의회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하 양원에서 많은 토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또 삭제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 양원을 모두 친이민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이라 원안이 많이 수용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불체자 구제안

법안의 기본 골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서류미 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 경과 후 1) 범죄/국가안보 관련 신원조치를 통과하고 2) 5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부여하고,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DACA수혜자들, 재난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와 일시적인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중미의 난민들 그리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영주권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들도 통상적으로 5년 대기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서류미비자들에게 3년 대기 기간만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시작의 기준 연도 또한 서류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1일 이전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과 관련된 제한도 현재는 1년의 중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도 제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 이민과 관련된 제안들

1) 특정 국가에 할당된 취업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자들에 대한 쿼터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와 중국계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취업 이민자들의 케이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약 14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연간 취업영주권 발급 숫자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안도 있습니다.

3) 취업영주권 심사에 적체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취업이민 대기 기간의 단축도 제안했습니다.

4) 심사 적체로 연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비자 쿼터를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5)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6) 취업이민 심사를 지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정작 고려되어야 할 고용주와 신청인의 자격 요건 대신 신분 유지(특히 학생 신분) 점검에 올인을 했던 최근 취업이민 심사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H-1B에 대한 제안

1) 고임금/고학력 H-1B 지원 회사와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미국 내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한 대목이라 주목됩니다.

2) H-1B 쿼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H-1B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시 노동허가증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중 자녀들이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Aging-out 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가족 이민 관련 사항

1) 현재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체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 금지를 규정한 조항의 폐지 제안했습니다.

2) 가족 초청 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의 일시적 체류 신분 부여를 제안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 1351호에서 이어집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상실된 치아를 복원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었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현재 새로운 치과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티타늄을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는 40여년 전 스웨덴에서 틀니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치악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형태의 틀니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기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식립된 임플란트에 고정된 틀니는 탈락이 쉽고 저작하는 힘을 많이 줄 수 없던 일반 틀니에 비해 훨씬 편하고 강한 저작력을 발휘해 사람들로 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부위에도 적용되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의 임플란트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여러 시행착오와 끊임 없는 과학적 연구 끝에 최근 10년 동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법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에 기능을 우선시 하던 치료 관점에서 이제는 자연치아와 같이 심미적인 만족과 기능적인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법이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자연치아의 기능과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시된 임상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는 30년 동안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 치료법 중 가장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는 미래를 약속하는 치료법이고 이를 이용한 치료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많은 치과에서 일반 기본 치료법 중 하나로 선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임플란트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치아의 심미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플란트 식립 전에 우선 임플란트가 심길 부위 조직을 자연치아가 있던 상태와 비슷하게 재건해야만 가능합니다. 심한 충치나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발치되면 치아 주변 골조직과 연조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조직들은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던 조직들이어서 치아가 발거되면 그 기능

을 잃고 존재의 이유를 갖지 못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혹은 전부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조직에 임플란트를 심어 자연치아 상태의 결과를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눈여겨 보는 것이 뼈의 양과 밀도입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고 또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치아 발거 후 남은 뼈의 양이 필요한 크기의 임플란트를 위해 충분한지 알아야 합니다. 뼈의 양이 부족하면 골 이식술이 필요합니다. 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뼈의 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치아의 재건이 끝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불행히도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심겨진 임플란트는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좋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술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한번 뼈에 밀착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할 수 있는 상태로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시술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결과 예측을 고려한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토대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시술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